

상 별 규 정

제정 1996. 3. 1.
 개정 1998. 9. 1.
 개정 1999. 5. 17.
 개정 2000. 9. 1.
 개정 2012. 3. 1.
 개정 2014. 6. 1.
 개정 2016. 3. 1.
 개정 2018.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칙 제46조, 47조 및 학생 준칙에 의한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구) 학생 상별규정 전항에 관한 사항 및 학생단체활동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학칙 제41조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포 상

제4조(포상) 총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1. 학교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
2. 학생활동에 공로가 크거나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
3. 학·예술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학생
4.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5. 기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결의된 학생

제5조(발의)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포상발의 부서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지도위원회에 상정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에서는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나 스쿨원장 추천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징 계

제6조(징계) 학생징계는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학생지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내봉사·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하여 징계하며,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7조(교내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정하는 6시간 미만(1일 1시간 미만)의 교내 봉사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종 불이익을 받으며, 교내 봉사활동을 이행치 않을 경우 사회봉사활동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1. 학교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질서 불이행 학생. 단, 기초생활 질서의 내용은 따로 공고하며 학생이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 가. 다음 학기 각종 교내 장학금 수혜 금지
- 나. 기숙사 퇴사 및 다음학기 입주 불가
- 다. 도서 대출 금지 8주 (단, 방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근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3일 이상 7일 미만의 근신에 처한다.

1. 학생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한 학생
2. 학내에서 무단으로 기숙한 학생
3. 면학분위기를 흐리게 한 학생
4.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5. 기타 학생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학생

제9조(유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7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유기정학에 처한다.

1.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학우에게 헐박 또는 폭행 한 학생과 이를 묵인한 학생
3. 단체행사를 교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동조한 학생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단 정상에 따라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의 학점취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5. 수업, 행사, 음주, 도박행위 등에 대한 교직원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6. 교내 게시물을 무단 게시한 학생
7. 학생회 간부로 선임 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공금횡령, 이권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여한 학생
8. 기타 교육적으로 보아 유기정학에 준할만한 행위를 한 학생

제10조(무기정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1개월 이상의 무기정학에 처하며,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업을 정지하고 학교에 출석하여 특별지도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내 출입을 금할 수 있다.

1.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학우에게 집단폭행을 한 학생
3. 고의로 학교시설 또는 교육기자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에 반출한 학생
4. 이유 없이 학교 및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린 학생
5. 학생회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6. 시험 중 대리 응시를 한 자와 이를 응시토록 주선한 학생. 단, 당해 학기 수강하는 과목의 일부 또는 전 과목의 학점취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7. 기타 교육적으로 보아 무기정학에 준할만한 행위를 한 학생

제11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1. 제1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학생
2. 총장의 허가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학생
3. 교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학생
4. 교내에서 불온광고나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부착한 학생
5. 교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또는 같은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거나 선동을 한 학생
6.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당해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훼손한 학생
7. 타교 학생으로 하여금 각종 고사에 대리시험을 응시케 한 학생
8.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를 한 학생
9. 성향이 불량하여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10. 기타 교육적으로 보아 제적에 준할 만한 행위를 한 학생

제12조(징계의 통보) 학생지도위원회장은 교학처에서 징계사실을 대상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제13조(정지 또는 자격상실)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생자치활동 및 기타 학생으로서의 권리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지 또는 상실된다.

제14조(감면) 총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선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감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징계해제)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가 해제된다.

1.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징계가 해제된다.
2. 무기정학은 지도교수와 스쿨원장의 건의에 따라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3. 징계 해제시는 학생본인 및 보호자의 연서 서약서를 받아 학생지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말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징계를 말소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그 후 학내·외 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또한 학업성적이 현저히 향상되어 1년을 경과한 경우 단, 처벌 당시 졸업학년의 경우는 6개월 경과 후에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징계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2. 징계말소 청구는 지도교수와 스쿨원장을 경유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말소의 결정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말소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학적부에 기록되며, 징계처분이 말소된 자가 다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말소된 징계처분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종전에 받은 징계처분에 소급하여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제17조(학적부 등재)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징계사항을 학적부에 등재한다. 단, 졸업 시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처분 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제1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